

인천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나507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나5079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소1042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정언

변론 종결 2020. 7. 24.

판결 선고 2020. 9. 2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소1042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C생)의 아들로, 기초연금과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 등이 입금되던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14. 7. 25.부터 2019. 1. 8.까지 59회에 걸쳐 합계 21,282,000원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이를 가로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장녀 D이 자신의 딸(원고의 외손녀) 명의로 2012. 12.부터 2015. 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돈 합계 3,100,000원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이를 가로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4,382,000원(= 21,282,000원 + 3,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우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다만 갑 제4호증의 1 내지 3면의 표 기재 순번 중 51, 52, 54 내지 56번은 출금이 아닌 입금 내역이다), 이를 인출한 사람이 피고라거나, 나아가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장녀 D이 자신의 딸(원고의 외손녀) 명의로 2012. 12.부터 2015. 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약 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듯, 송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는 그동안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용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송금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나 D이 피고에게 위 돈의 행방을 따지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매월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광우

판사오흥록

판사윤성현